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8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3

I. 개요

1.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58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5. 23.
- (3) 회 부 일 : 2025. 5.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허위·과다 청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공적 자금의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제재의 미비, 형식적 행정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부정청구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재수위가 미미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오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1. ~ 3. (생략)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
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의2. (생략)

5.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

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또는
그 경영책임자가 제37조제1항제4
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
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
우 해당 운영자, 법인 또는 기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해당 법인 또
는 기관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u>2. 부정청구 행위의 종류 및 수법</u> <u>3. 해당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 및 피해의 규모</u> <u>4. 위반행위를 통해 운영자 또는 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u> <u>5. 위반행위의 기간, 반복성 또는 조직성 여부</u> <u>6. 운영자 또는 법인의 자산 규모 및 경영상태</u> <u>7. 피해구제 조치, 재발방지 노력 및 사후 개선 여부</u>
--	--

※ 시행일: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또는 경영책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또는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현행법 제37조¹⁾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의2²⁾에서는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67조³⁾에서는 형사벌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43조⁴⁾에서는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20-2024년) 현행법 제37조제1항제4호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5,447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3만 166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580억 3,300만원이 부당이득으로서 징수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최근 5년간(2020-2024년) 현행법 제37조제1항제4호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결정 현황 >

(기준: 2025.6.4.,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결정년도)	총계					
	기관수	결정건수	결정금액	납부금액	미납금액	징수율
계	5,337	130,166	258,033	226,239	31,794	87.68
2024	1,127	25,175	50,697	39,046	11,652	77.02
2023	1,349	30,924	72,580	64,838	7,742	89.33
2022	1,096	28,561	58,400	49,912	8,488	85.47
2021	949	27,857	51,193	48,256	2,937	94.26
2020	816	17,649	25,163	24,188	974	96.1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또는 그 경영책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운영자, 법인 또는 기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참고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규정된 이후 각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왔으며, 현재 공정거래, 개인정보, 소비자 안전, 노동, 지식재산권 등 주로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어 있음.⁵⁾

□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며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⁶⁾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를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징수 대신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게 지출

5) [참고사항]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황 참조

6) 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도록 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

3. 삭제 <2020. 8.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법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약서에 기재된 날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된 급여비용의 원상회복에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공단이 입게 된 손해의 사정이나 범위, 무엇을 손해로 볼 것인지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소 제기 시 이에 관한 공단의 입증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둘째,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부당이득 징수와 함께 지정취소, 업무정지(또는 청구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할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으므로, 도입 필요성 및 규정방식 등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⁷⁾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부당이득 징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⁸⁾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7)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8)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 셋째, 현행법 제38조⁹⁾에서는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는 주체를 ‘장기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또는 그 ‘경영책임자’¹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넷째, 안 부칙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정안 시행 전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경우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서 처벌이 가능함.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10) 안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현행법의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경영책임자”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어 그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공적보험의 재정건정성 강화 및 낭비요인 해소,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조사의 실효성 강화 등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위법행위의 결과나 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등에 따라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또는 과징금(최대 5배) 처분 및 행정벌의 부과도 가능하므로 사실상의 추가적인 제재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의 해당 금원은 성격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현재 공단에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한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잘못 지급된 비용에 대한 반환 조치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법리에 대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부당이득으로 인해 공단이 입게된 손해의 대상, 범위 등이 불확정적이며 소 제기 시 공단의 입증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행법 제43조에 따른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권은 금전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보다는 부당하게 지출된 재정을 원상회복함으로

써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배에 상당하는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함.

- 또한, 현행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및 행정벌이 규정되어 있는바, 부정 수급기관을 제재하기 위하여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

[참고사항]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황

분야	법률명	주관적 요건	한 도	대 상	도입 시기
공정 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당 발주 취소 등	20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허위정보제공, 상품·용역 공급의 부당 중단 등	20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	20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상품 대금 감액, 정당한 이유 없는 상품 반품 등	20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부당공동행위(담합) 등	201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부당한 사육자재 공급 등	20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5배	정당하지 않은 물품 수령 거부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2019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고의 중과실	5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	20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 중과실	5배	신용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	2015
소비 자 안전	제조물책임법	고의	3배	제조물 결함에 따른 생명, 신체 의 중대한 손해	2017
	환경보건법	고의 중과실	3배	환경유해인자로 발생한 환경성 질환 등 손해	2018
	자동차관리법	고의	5배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2020
노동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백한 고의	3배	차별적 처우의 반복	2014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백한 고의	3배	차별적 처우의 반복	20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명백한 고의	3배	차별적 처우의 반복	20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의 중과실	5배	중대재해 발생	2021
지식 재산 권 등	특허법	고의	5배	타인의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	20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	5배	영업비밀 침해 행위	2019
	디자인보호법	고의	3배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2020
	상표법	고의	3배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	20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	3배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	2019
공익신고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고의 과실	3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	2017